

『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』 (법률 제11062호, 2011. 9. 16 공포 2012.3.17시행) 제31조 제11항에서 위임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임기 및 기능(안 제3조, 제4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(안 제2조, 제5조)
 - 구 성 : 11명 이내(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)
 - 위 원 : 구미시 5급 이상 공무원, 각 사업지구의 읍·면·동장, 변호사·법학교수·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, 지적측량기술자·감정평가사·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,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.
 - 회 의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 및 제31조
- 입법예고 : 2013. 1. 16 ~ 2. 5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됨.(2013.2.12)

5. 검토의견

□ 본 제정조례안은,

- 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』 (법률 제11062호, 2011. 9. 16 공포 2012.03.17시행) 제31조 제11항에서 위임한,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 -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11명 이내이며,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, 위원은 구미시 5급 이상 공무원, 각 사업지구의 읍·면·동장, 변호사·법학교수·그 밖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, 지적측량기술자·감정평가사·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,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음.
 - 본 위원회의 기능은 “경계설정에 관한 결정”, “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”을 결정 또는 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, 지적재조사 사업에 민원해소 및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.
-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